

준요양기관에 요양비 대리청구를 위임하는 경우

환자 또는 그 가족이 요양비 전액(본인부담금 + 공단 부담금)을 준요양기관에 지불하고, 준요양기관에 요양비 청구만 대신하도록 위임 하는 것입니다.(환자 또는 그 가족 계좌로 지급)

※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작성 시 요양비 수령 계좌를 위임인(환자 또는 그 가족) 계좌로 작성 제출 필요

준요양기관에 요양비 직접청구를 위임하는 경우

환자 또는 그 가족이 요양비 본인부담금만 준요양기관에 지불하고, 공단부담금은 준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청구하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.(준요양기관 계좌로 지급)

※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작성 시 요양비 수령 계좌를 준요양기관 계좌로 작성 제출 필요

04

환자가 요양비 위임 및 청구·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

공단홈페이지(<http://www.nhis.or.kr>) 인증서 로그인 →

개인민원 → 민원여기요 → 보험급여 → 요양비 청구

→ 요양비청구 위임내역 조회, 청구(지급)내역 조회

■ 모바일 앱(The 건강보험)에서의 요양비 청구위임내역 및 청구내역 확인 방법

①모바일 앱(The 건강보험) 인증서 로그인 → ②전체메뉴 → ③민원여기요 → ④조회 → ⑤요양비 청구위임내역 및 청구내역 조회

※ 향후에는 모바일 앱에서도 요양비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입니다.

05

공지사항

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, 고객센터(1577-10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nhis.or.kr>)

국민과 함께 > 뉴스/소식 > 공지사항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7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·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며,

또한, 같은 법 제10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요양비

청구방법 개선
전산·서면청구
병행



요양비 지급신청 2021년 7월부터 전산청구도 가능합니다



h-well
국민건강보험

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(반곡동)
민원상담 국번없이 1577-1000
<http://www.nhis.or.kr>



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

h-well
국민건강보험

1577-1000

요양비 보험급여 제도란 무엇인가요?

요양비 급여제도란?

-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(약국,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·임대업소 이하 '준요양기관'이라한다)에서 질병·부상·출산 등에 대하여, 요양(소모성재료·관리기기 구입, 기기대여 등)을 받거나 출산을 한 경우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※ 관련법령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

요양비 급여품목은?

-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(혈당측정검사지, 채혈침, 인슐린주사기 및 주사바늘,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, 연속혈당측정용전극)/ 당뇨병 관리기기(연속혈당측정기, 인슐린자동주입기)/ 만성신부전증/ 자가도뇨 소모성재료/ 산소치료/ 인공호흡기/ 기침유발기/ 양압기/ 출산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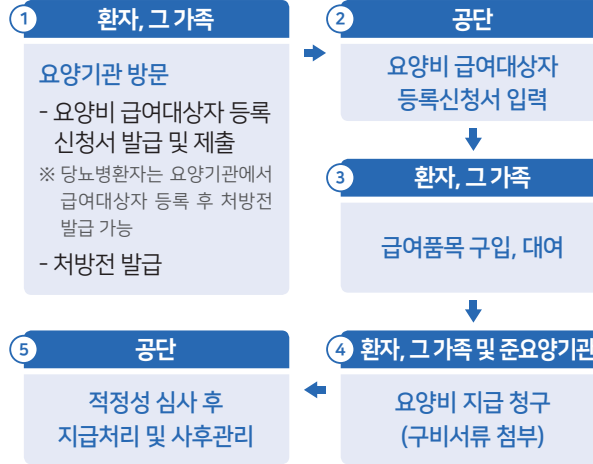
요양비 지원금액은?

- 기준금액 또는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의 급여 품목별 50% ~ 90% 지원

※ 차상위대상자는 100% 지원. 다만, 양압기 순응기간 중 급여는 80% 지원



요양비 지원절차는?



요양비 지급청구 방법이 추가되었어요

■ 서면(우편, 방문) 청구로만 가능하던 요양비 지급청구가 **전산(인터넷)청구**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환자 및 그 가족이 요양비를 직접청구 하는 경우

전산청구방법

①공단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입력 ②구비서류(처방전,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)를 파일(사진촬영, 스캔장비 등 이용) 첨부하여 저장 후 최종제출하면 ③공단은 적정성 심사 후 지급 처리합니다.

※ **청구인 자격** : 환자, 환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며, 환자가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※ 공단홈페이지(<http://www.nhis.or.kr>) 민원여기요 > 개인민원 > 보험급여 > 요양비청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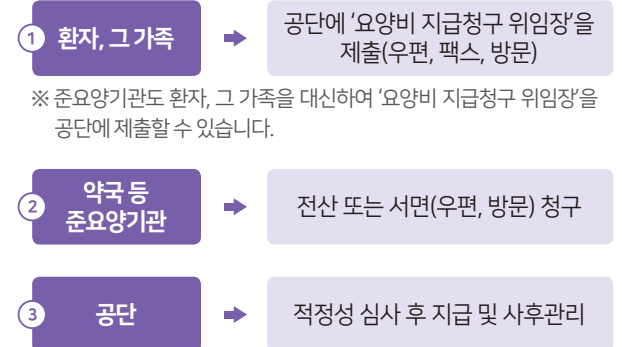
서면청구방법

①요양비 지급청구서와 구비서류(처방전,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)를 ②공단에 제출하면(방문, 우편) ③적정성 심사 후 지급 처리합니다. 다만, 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에 급여품목이 상세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'거래명세서'를 **반드시** 첨부하여야 합니다.

※ 요양비 지급청구서는 '공단홈페이지' (<http://www.nhis.or.kr>) > '서식자료실' 에서 다운로드

환자 및 그 가족이 약국 등 준요양기관에 요양비 직접청구를 위임하는 경우

위임·청구절차



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제출 시 유의사항

■ 위임장 제출 시에는

위임인(환자 또는 그 가족)의 **신분증 사본**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가능)을 **반드시** 첨부하여야 합니다.